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98
----------	-----

2020. 4. 23.(목)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0년 4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4월 16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4월 23일

-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한순기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면제대상 공동명의자 확대에 따른 조문수정
(안 제2조제1항)
- 제2조제1항의 적용이 불가능한 외국인에 대한 증빙서류 규정 신설
(안 제2조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으로 이관 신설됨에 따라 감면기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지방세 이자상당 가산액 규정 신설(안 제20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 (이강근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의 취득세 면제와 관련해 공동명의자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취득세에 대한 조세 감면 기간 및 추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취득세 면제의 공동명의자와 관련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구분되어 사용되던 용어를 직계혈족으로 재 정의하고,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까지 확대한 것임.

현 행	개 정 안
■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 **직계혈족**: 본인의 직계 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하는 말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직선으로 계속하여 자기에 이르기까지의 혈족을 일컫는 말로서, 부모·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 등을 말함. 직계비속과 반대되는 개념
- ※ **직계비속**: 자·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 직계존속에 상대되는 개념

- 안 제2조제5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취득세 면제 신청 시,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임.
- 이는 현행 규정상 외국인의 경우, 증명 서류 제출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로 한정돼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등록외국인 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제출로 증명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감면 지원을 확대한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 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 <참고> 최근 3년간 도 내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세(취득세) 감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3	28	13	13	6	8	4	7

- 안 제7조는,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련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함) 제78조의3으로 이관, 신설됨에 따라 규정한 것임.
 - 특히 안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길게 규정한 것은,
 - 법 제78조의3제1항 및 법 제78조의3제3항에서 감면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2019년 12월31일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적용하던 감면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감면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안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사업	감면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등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 부동산은 100분의 100 감면	7년
	그 다음 2년 이내 취득 부동산은 100분의 50 경감	3년
외국인 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100분의 50 경감	5년
	그 다음 2년 이내 취득 부동산은 100분의 30 경감	2년

- 안 제20조제2항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현행 조례의 감면된 취득세 추징 조항들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제123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되, 영 제123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산하지 않도록 규정함.
 -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1. 15.>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법 제17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1일당 10만분의 25

② 법 제178조제2항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본조신설 2020. 1. 15.]

□ <참고> 최근 3년간 외국인투자유치지원 도세 감면 현황

(단위: 백만원)

시군명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6	325	5	915	6	709
청주시	6	325	4	322	3	15
충주시	0	0	1	593	3	694

- 부칙 제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 감면에 대한 적용례)는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감면 적용 시기를 규정하였고, 부칙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관한 적용례)는 영 부칙 제2조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면제대상 공동 명의자 확대 및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 감면과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 내용적으로 타당하며, 절차상으로도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거친 바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8
----------	-----

제출연월일 : 2020년 4월 1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면제대상 공동명의자 확대에 따른 조문수정(안 제2조제1항)
- 제2조제1항의 적용이 불가능한 외국인에 대한 증빙서류 규정 신설(안 제2조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으로 이관 신설됨에 따라 감면기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지방세 이자상당 가산액 규정 신설(안 제20조제2항)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로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 중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는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의 감면기간을 따른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 중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3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영 제123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 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취득세등 면제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

-----.

④ -----

----- 제8조제6항 -----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2. (생략)

<신설>

제20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생략)

<신설>

1.·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 중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는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의 감면기간을 따른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 중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20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3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영 제123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 4. 17, 2012. 12. 21, 2015. 12. 31, 2016. 12. 30, 2018. 12. 31>

1. 삭제 <2015. 12. 31>
2. 삭제 <2015. 12. 31>
3. 삭제 <2015. 12. 31>
4. 삭제 <2015. 12. 31>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5. 12. 31, 2020. 1. 15>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 1. 15>

1. 장애인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형제자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5>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15>

⑥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31, 2016. 12. 30, 2020. 1. 15>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 · 화재 ·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④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 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추징할 세액의 범위 및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 15.]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1. 15.>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 15.>